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 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의 특이사항

Q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 "간편심사"상품으로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이외의 항목을 사용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는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종신보험 고유의 사망보장 기능에 보험료의 자유납입 및 추가납입,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니버셜(Universal) 기능을 추가하여 편의성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공시이율(시중금리에 연동하는 이율체계)을 적용하여 물가상 승 및 시간경과에 따른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가치하락을 방지하며, 이 계약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하는 연복리 0.75%,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Q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사망보험금은 무엇인가요?

기준시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의 105%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기준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다만,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의 105%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 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 감합니다.

Q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추가납입보험료란 무엇인가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로 합니다.

- 연간 납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납 기본보험료 × 12 × 200%

Α

Q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중도인출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자는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내에서 전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은 1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제외)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 2.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200만원과 기본보험료(특약 보험료는 제외)의 12배 중 적은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으나, 예정적립액에서 예정월대체보 험료를 차감할 수 있을 때부터 예정적립액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 다.
- A 최저사망보험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2/1,000(매월 보험가입금액의 0.01%)
 - +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1%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0083333333%)

Q 장기납입유지보너스란 무엇인가요?

Α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을 초과하여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예정적립액에 가산합니다.

납입회차	해당금액	
61회차 ~ 84회차	주계약 기본보험료 3%	
85회차 ~ 납입완료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7%	

Q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월대체보험료란 무엇인가요?

1. 월납

-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해당월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경과 후

Α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 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 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하는 계약 중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으며, 계약자적립액 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이미 인출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과 5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Q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은 보험료 할인이 되나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계약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계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7,000만원 미만	0%		
	할인방법	7,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단, 9,800만원 초과~1억원 미만 가입불가)	1.0%		
고액 계약 보험료 할인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단, 1억9,700만원 초과~2억원 미만 가입불가)	2.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단, 2억9,6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가입불가)	3.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단, 4억9,400만원 초과~5억원 미만 가입불가)	4.0%		
		5억원 이상	5.0%		

Α

- 할인액은 "영업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제외) x 할인율"로 계산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월대 체 보험료에 대해 해당 할인을 적용
- 계약자가 원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할인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예정적립액에 가산할 수 있음. 다만, 보험료 할인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음
- 보험기간 중 해당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가입금 액 및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만일 고액계약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전의 보험료를 적용

Q 갱신형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전까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Α

-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91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세 만기로 갱신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및 갱신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역 및 사유를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Q 갱신형특약의 갱신불가사유는 무엇인가요?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전까지 계약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A -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100세 이상인 경우

-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계약이 소멸된 경우

2.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

2) 보험기간

- 주계약 : 종신

- 특 약: 10년만기 갱신형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3) 납입기간

- 주계약: 5년·7년·10년·15년·20년납·30년납, 55세·60세·65세·70세·75세·80세납

- 특약 : 전기납

4) 가입나이 : 41세 ~ 최고 74세

* 유형, 납입기간별로 가입나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가입한도 및 가입단위

구 분	가입한도	가입단위
주계약	2,000만원 ~ 2억원	500만원

* 가입한도는 회사의 계약선택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건강진단 여부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으로 건강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3-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간편든든암진단특약 무배당 (갱신형) (선택특약)

- + 간편든든소액암진단특약 무배당 (갱신형) (선택특약)
- + 간편든든입원특약 무배당 (갱신형) (선택특약)
- + 간편든든수술보장특약 무배당 (갱신형) (선택특약)
- + 뉴연금전환II특약 무배당 (제도성특약)
- + 선지급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3-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

-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금액

- 주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간 종료 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 주2) 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주3)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x 105%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 계약 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주4)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다만,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주5)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하는 연복리 0.75%,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주6)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주7) 최저시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으나, 예정적립액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있을 때부터 예정적립액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간편든든암진단특약 무배당 (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 250만원 2년이상 : 500만원
유방암 이외의 암진단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 250만원 2년이상 : 500만원

- 주1)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3)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린 '동일한 재해' 또는 '유방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유방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주4)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5)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주6)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암진단금 및 유방암 이외의 암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암진단금 및 유방암 이외의 암진단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합니다.
- 주7) 암진단금 및 유방암 이외의 암진단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암진 단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에 "유방암"과 인과관계(이미 암진단금이 지급된 "유방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가 있는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회사는 유방암 이외의 암진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8) 갱신계약의 경우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금이 지급된 "유방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진단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간편든든소액암진단특약 무배당 (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소액암 진단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 50만원 2년이상 : 100만원

- 주1)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 주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4)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린 '동일한 재해'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주5)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6)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소액암 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액암 진단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합니다.

- 간편든든입원특약 무배당 (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50% 지급)

- 주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갱신 전 계약 (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린 '동일한 재해'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주2)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3)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4)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주5)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원비의 50%를 지급하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2년 미만 기간의 입원비는 50%를 지급하며, 2년이후 기간의 입원비는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합니다.

- 간편든든수술보장특약 무배당 (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50% 지급)

- 주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갱신 전 계약 (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린 '동일한 재해'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주2)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3)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4)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술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합니다.

- 뉴연금전환II특약 무배당

=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연금	종신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10년,
	확정연금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 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10년~60년[5년단위]중 선택) 동안 분할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시망률' 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주1)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주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주3) 종신연금, 확정연금 및 상속연금은 연금액 지급시마다 '연금수령기간 중 계약관리비용(연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의 금원)'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주4)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

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5)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보험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주8)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연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 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9) 종신연금의 5% 체증형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초년도연금액에 체증률(5%)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초년도연금액에 체증률(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재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10) 종신연금의 10% 체증형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초년도연금액에 체증률(10%)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초년도연금액에 체증률(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재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11) 초기집중강화기간이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1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연금연액 10회), 연금유형중 종신연금(초기집중강화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주12) 종신연금(초기집중강화형)의 경우, 초기집중강화기간 10년이 지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초기집중강화기간(10년)에 지급된 연금액의 50%로 변경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13) 확정연금의 경우 확정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60년[5년단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보험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14) 상속연금의 경우 초년도연금액은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차년 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 개시후 피보험자가 시망한 경우에는 시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주15)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부터 연금개시일전(거치기간중)에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약관 제12조(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주16) 이 특약은 주계약 기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률, 적용사업비율)을 적용합니다.
- 주17)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된 때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 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 주18) 해당연도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주계약 및 각 특약의 보험금 지급세부내용은 각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계약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

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보험을 청약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3)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부지급사유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4-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 A 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3.00%입니다.

4-2.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Q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 무엇인가요?

A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으로 이 계약의 적립이율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024년 4월 현재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연복리 2.14%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의 사업방법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3.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립이율의 최저한도로서 간편 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하는 연복리 0.75%,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4-4. 중도해지이율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은 중도해지이율이 없습니다.

4-5.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위험률명			남 자			여 자	
		41세	50세	60세	41세	50세	60세
무배당	예정	0.000863	0.001978	0.005753	0.000550	0.001392	0.002588
간편고지	사망률	0.000603	0.001976	0.005/55	0.000550	0.001392	0.002366

4-6.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무엇인가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404 (보증비용부과형)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6-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iM라이프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6-2.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남자, 41세, 종신,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1억원

(단위: 원)

							(- 11)
경과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기간	(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780,000	15,619	2.0%	15,655	2.0%	15,655	2.0%
6개월	1,560,000	31,268	2.0%	31,393	2.0%	31,393	2.0%
9개월	2,340,000	46,945	2.0%	47,215	2.0%	47,215	2.0%
1년	3,120,000	62,653	2.0%	63,120	2.0%	63,120	2.0%
2년	6,240,000	1,791,945	28.7%	1,848,792	29.6%	1,848,792	29.6%
3년	9,360,000	4,159,984	44.4%	4,287,001	45.8%	4,287,001	45.8%
5년	15,600,000	8,908,495	57.1%	9,261,751	59.4%	9,261,751	59.4%
10년	31,200,000	20,409,940	65.4%	21,889,313	70.2%	21,889,313	70.2%
15년	46,800,000	31,027,319	66.2%	34,891,743	74.6%	34,891,743	74.6%
20년	62,400,000	41,379,683	66.3%	48,876,968	78.3%	48,876,968	78.3%
30년	65,040,000	34,764,421	55.7%	52,346,322	83.9%	52,346,322	83.9%
40년	65,040,000	12,670,160	20.3%	47,022,231	83.4%	47,022,231	83.4%

■ 기준 : 여자, 41세, 종신,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1억원

(단위: 원)

경과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기간	(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681,000	13,636	2.0%	13,668	2.0%	13,668	2.0%
6개월	1,362,000	27,299	2.0%	27,408	2.0%	27,408	2.0%
9개월	2,043,000	40,987	2.0%	41,222	2.0%	41,222	2.0%
1년	2,724,000	54,701	2.0%	55,109	2.0%	55,109	2.0%
2년	5,448,000	1,429,929	26.2%	1,478,558	27.1%	1,478,558	27.1%
3년	8,172,000	3,482,445	42.6%	3,591,135	43.9%	3,591,135	43.9%
5년	13,620,000	7,590,444	55.7%	7,892,826	57.9%	7,892,826	57.9%
10년	27,240,000	17,482,010	64.1%	18,746,758	68.8%	18,746,758	68.8%
15년	40,860,000	26,741,076	65.4%	30,041,385	73.5%	30,041,385	73.5%
20년	54,480,000	36,047,742	66.1%	42,427,908	77.9%	42,427,908	77.9%
30년	54,480,000	32,978,663	60.5%	47,512,942	87.2%	47,512,942	87.2%
40년	54,480,000	22,697,211	41.6%	48,801,075	89.5%	48,801,075	89.5%

- 주1)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 평균공시이율 2.75%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현재(2024.04)의 공시이율 2.14%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주2)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주3)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하는 연복리 0.75%, 10년 초과는 연복 리 0.5%입니다.
- 주4)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5) 위 예시된 금액은 고액계약 할인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기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7.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 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Α

-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남자/여자, 41세]

상품명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남자	여자	(만원)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무)2404(보증비용부과형)_할인형	- 종신	20	99.7%	99.0%	10,000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무)2404(보증비용부과형)_기산형			99.7%	99.0%	10,000